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1. 9. 23.(목) 15:3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5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4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국회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 의결

- 한상혁 위원장

- 비공개 회의록 및 속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선임’ 관련 제37차, 제40차 회의의 비공개 회의록과 속기록은 그간의 선례 등을 참고하여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발언 위원의 성명 등을 음영처리한 후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21-42-125)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입니다. <가> 주식회사 골프존데카 등 [별지 1] 기재된 14개 법인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하고, [별지]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과한다. <나> 주식회사 편월드 등 [별지 2]에 기재된 4개 법인에 대해서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제3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2021년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허가신청 접수를 하였고, 이 기간 중 주식회사 편월드 등 총 18개 법인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법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했고, 임원 결격사유 여부 및 법인 여부에 대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를 위하여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재무, 영업, 기술 각 분야별 전문가 총 9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2021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심사결과입니다. 법령에 따른 심사기준은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 기준별 평가방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위치정보

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위치정보 보호 관련 조치계획의 적정성(40점), 총 100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획득 시에는 적격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주식회사 골프존 데카 등 총 14개 법인은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적격으로 판단하였고, 주식회사 피에스는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이나, 총점 70점에 미달하여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편월드, 캐터필러 디지털 서비스시스 & 솔루션즈 에스에이알엘, 주식회사 아이엔피글로벌은 일부 심사사항별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며, 총점도 70점에 미달하여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입니다. 허가 조건은 위치정보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 1]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9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결과서를 통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번에 18개 법인이 신청해서 14개 법인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탈락한 업체 점수를 보니까 60점대도 아니고 30점대, 40점대도 있는 것으로 봐서 매우 준비가 덜 된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그분들도 앞으로 다시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이런 지적사항들을 잘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법인 자체들이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이라서 능력에 편차가 큼니다. 그리고 한번 떨어진 후 다시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또 재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받은 지적사항들을 보완해서 신청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본 위원회 허가 사업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면서 허가해 주는 일은 본 위원회가 그동안 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위치정보법이 발효된 지 10여년이 되고, 또 그동안 허가해 준 위치정보사업자도 거의 1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허가 시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런 허가 절차만큼이나 이제 허가 후에 사후점검 또 관리 부분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사업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폐업하게 될 때 국세청에는 신고하면서 허가기관인 방통위에는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잠재적 피해자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은가 추정됩니다. 그래서 허가 절차만큼이나 이제는 사후점검과 특히 폐업 시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 사전에 이용자들을 보호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어떤 효율적이고 또 실질적인 수단이 있는지 사무처에서 꼼꼼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과방위에 통과된 위치정보법에는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생겼고, 그것에 따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정밀한 실태점검이 이루어지고, 사업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고 또 개인위치정보 파기 실태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교통, 날씨, 광고부터 최근에는 잔여백신 조회까지 위치정보는 무궁무진한 활용성으로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원 가운데 하나로 부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높아진 가치만큼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번 허가 심사 때마다 언급했지만 위치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허가 사업자 분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관련 법령과 허가조건에 충실한 이행을 담보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안전한 위치정보 활용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2021-42-126)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1> 의결주문, 주식회사 티와이홀딩스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한다. <나> [별지]와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티와이홀딩스가 신청한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신청현황입니다. <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주)티와이홀딩스는 2021년 4월 30일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인 SBS미디어홀딩스(주)를 합병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2021년 5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추진 경과, 2021년 8월 30일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셨으며, 지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기간 중인 9월 7일 (주)티와이홀딩스, SBS, SBS총사자대표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심사위원회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에는 (주)티와이홀딩스 대표 및 그 최대주주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원회에서 실시 하셨습니다. <4>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그리고 <5> 심사 항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위원회 심사 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인 (주)티와이홀딩스가 제출한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변경승인 신청서, 사업자 의견청취 내용,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당시의 승인 조건 내용 및 이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의 측면에서 방송법 상 최다액출자자의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이 SBS미디어홀딩스(주)를 흡수·합병하여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소유제한 문제를 해소하는 지배구조 개편 방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작년 6월 1일 사전 승인 시 부과한 조건이 이행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지주회사 내 방송 부문의 독립성 확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확립 방안 등이 미흡하고, 최다액출자자로서 SBS 지원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어 관련한 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부가를 건의하였습니다. <7> 신청인의 의견진술 주요내용입니다. 신청인인 (주)티와이홀딩스 유종연 대표와 그 최대주주 윤석민 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주)티와이홀딩스 설립은 태영그룹 전체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특히 건설사의 경기 변동성 위험이 전체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경영과 독립적인 자율 책임경영을 위한 것이며, 신청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지키고, SBS의 재무 건전성과 미래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잘 준수하였으며, 또한 (주)티와이홀딩스 체제 하에서도 SBS가 경영투명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티와이홀딩스와 그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SBS를 이용하지 않겠으며, 아울러 신청인의 최대주주는 SBS 노사관계에 관하여 노사가 서로 잘 협의해서 스스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사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가> 변경승인 여부, (주)티와이홀딩스의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승인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관련해서는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지주회사 내 방송부문의 독립성 및 SBS 경영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최다액출자자로서 SBS 지원계획의 구체성 보완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부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조건으로 제시한 “미디어위원회 구성 등을 정관에 반영”하도록 한 사항은 신청인이 미디어정책실 운영계획 등 자체 조직 운영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경영 자율성을 고려하여 권고사항으로 부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변경승인 조건(안)입니다. ① 신청인은 지상파방송사를 소유한 지주회사로서 SBS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방송의 사적이용을 제한한 2020년 SBS 재허가 조건을 최다액출자자로서 성실히 이행할 것, ② 신청인의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에서 제시된 콘텐츠 투자펀드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한 SBS 미래발전계획을 지원할 세부실행 계획(지원규모, 일정 포함)을 SBS 및 SBS 종사자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변경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내용 및 진행상황을 즉시 제출할 것, ③ 신청인의 최대주주는 SBS미디어홀딩스(주)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제출한 이행각서를 준수할 것, ④ 신청인은 SBS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을 위해 SBS 최다액출자자로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변경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다음 권고사항(안)입니다. ① 신청인은 소유·경영 분리를 통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을 위해 신청인의 최대주주와 SBS노사가 합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합의서의 취지와 내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 ② 신청인은 SBS 이사회 구성 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송분야 전문 인사를 선임하도록 노력할 것. ③ 방송부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법인 내 방송담당 이사 및 미디어위원회 구성 등을 정관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심사위원회는 SBS가 2020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최다액출자자의 기여 방안 등을 담아 제출한 “SBS 미래발전계획”이 그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고, 신청인에게 “SBS 미래발전계획”을 지원할 세부실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SBS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점검 시 “SBS 미래발전계획”의 구체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9월 중으로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별지로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첨부하였고, <붙임>으로 (주)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의견서와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심사과정에서 변경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김창룡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제가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우리 위원회는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 승인 심사를 작년 5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사전 승인 심사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되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그룹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될 때 SBS에 대한 윤석민 회장 등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어 SBS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이 훼손되거나 SBS의 미디어 사업 분야 이익이 훼손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관련 승인조건을 부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심사의 주안점은 그동안 방송 지주회사로서 기능을 수행하던 SBS미디어홀딩스가 티와이홀딩스에 흡수·합병되면서 미디어홀딩스가 유지하던 기능들이 티와이홀딩스 내에서 독립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그리고 심사 진행 과정에서

종사자 대표 의견진술도 들었습니다. 대표자 임명동의제를 사측이 철회한 것은 소유와 경영 분리 약속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번 승인 심사에서 엄격하게 평가해 달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소유와 경영 분리의 명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심사위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는 인정되어야 하고, 선임된 이사진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소유와 경영 분리의 범위라는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티와이홀딩스의 최대주주가 이른바 10·13 노사위원회의 한 당사자인 점과 방통위가 2017년 그리고 2020년 SBS 재허가 권고사항의 동 합의사항 준수를 권고사항으로 부가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합의 취지와 내용 준수 노력 권고를 건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두 지주회사를 합병하는 최대주주 변경승인으로 당초 사전 승인 조건으로 부가했던 증손회사의 지분 보유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은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도 합병으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승인이 종합적으로 볼 때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주셨고, 또 위원회에서도 직접 신청인의 최대주주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해 SBS 공히 독립성 보장과 지원 의지를 확인하셨던 만큼 위원회에서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사무처의 보고 그리고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김창룡 위원님의 경과보고와 관련해서 질의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우선 김창룡 위원님과 심사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SBS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은 SBS미디어홀딩스, SBS 그리고 SBS의 자회사 등과 얽혀 증손회사의 경우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서 규정한 소유 규제사항 등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증손회사 소유 규제 문제가 상충하게 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티와이홀딩스로 합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일부 최다액출자자로서 SBS 지원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도 지적하였지만 승인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은 지난번 의견진술을 통해서 방송통신 위원회에 출석해서 티와이홀딩스 체제 하에서도 SBS가 경영 투명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티와이홀딩스와 그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SBS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국가와 한 약속이니 만큼 그것은 국민과 한 약속으로 여기고 성실히 지켜줄 것을 당부합니다. 사무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효재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먼저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김창룡 위원님과 여러 심사위원님들께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은 지상파와 지역

민방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향후 SBS가 지상파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담보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변화를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는 건이었습니다. 이미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쳤고 저희 위원회에서 최대주주의 의견도 청취해 심사 숙고한 결과인 만큼 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심사를 계기로 공공성이 강조되는 지상파 방송이라고 하지만 엄연한 민간 기업의 노사 문제에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숙고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심사는 재허가가 아닌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려 차원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대주주에게 경영 문제를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거론해 논리적 모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생각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고민 속에서 내린 결론인 만큼 신청인은 이번 승인을 단순히 공정거래법 위반 해소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SBS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부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확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의 건인데 지상파방송사가 국민과 한 약속, 지상파방송사의 공적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쪽 SBS가 오늘날까지 오게 된 과정에서 국민과 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방통위 차원에서 보고 있는지 사무처에서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문제가 있다, 상당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합의한 합의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과 또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데 그것은 종사자와 경영인 간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상파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SBS미디어홀딩스 최대주주와 또 티와이홀딩스, 미디어홀딩스의 대표자와 SBS 종사자 대표와의 약속이 다 지켜졌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일정 정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심사위원회 과정에서 지적은 없었는지...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심사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이 약속들이 다 지켜졌느냐는 취지로 질문은 종사자 대표나 신청인에 대해 의견청취 때에는 그렇게 직접적인 질문은 없었습니다. 다만, 종사자 대표 측이 의견 진술하는 기회를 통해 10·13 합의가 소유·경영 분리 부분을 제일 핵심으로 하고 그 내용이 사장 임명동의제로 표상이 되는데 그것이 올해 철회되었다, 그것은 소유·경영 분리라는 원칙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최대주주 변경승인 부분에 있어서 방통위가 이 부분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심사위원회에서 10·13 합의가 제대로 다 이행되었느냐고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두 번째로 의견청취 과정에서 윤석민 회장이 약속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종사자 대표가 부속합의문을 어겼기 때문에 그 약속은 파기된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종사자

대표의 경우는 최대주주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과하다, 그리고 그 합의는 이후에도 지켜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상충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는 취지를 살려서 합의를 잘해 주기를 바란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본다면 2017년도 10월에 합의문을 가지고 방통위에서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시 SBS미디어홀딩스 측에서 종사자 대표와 합의해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에도 이행각서를 다시 우리에게 제출해서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한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허가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약속이 깨졌다고 공식 선언을 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 하면 국민과 한 약속을 너무나 그때그때 여반장 하듯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다소 무리하게 합의문, 이행각서가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건보다는 권고로 가는데, 또 그러면 권고된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혹시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지금 말씀하신 내용 부분을 심사위원회에서도 깊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조건(안)과 권고사항(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붙임>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른바 10·13 합의서의 그 내용을 이번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에 직접적으로 신청인인 티와이홀딩스에 부과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문구를 합의문의 취지를 바탕으로 SBS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최다액출자자로서의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방통위에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즉, 이번 심사가 SBS 재허가라든지 SBS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이 아니라 티와이홀딩스에 대한 처분인 관계로 조건 부과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한계점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물론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재허가와 연결시켜서 보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보지만, 이것이 동전의 양면 같다고 봐야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 같습니다. 태영건설로 시작되어서 어쨌든 많은 이익을 얻게 된 배경에는 SBS 지상파방송이라는 것 때문이고, 지상파 방송은 단순히 어떤 민간기업의 대주주나 최대주주의 소유가 아닙니다. 국민과 함께 더불어 성장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국민들의 요구이자 SBS 종사자 대표들이 직원들을 대신해서 협상해 왔던 것이고 합의문이 그래서 제출됐던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우려하는 것은 또는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다면 필요할 때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합의문과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어떤 조건에 맞닥뜨려서 그것이 관철됐다면 그다음에 헌신짝처럼 버리고, 또 어떤 조건이 붙여서 또는 권고가 붙여져서 재허가 기간에 돌입하면 또 합의하겠다, 또는 논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방통위의 오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고, 최다액출자자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켜질 것을 확인하는 과정과 절차를 또한 저희가 밟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5월 29일 태영건설 지배주주 윤석민 회장에 의한 약속, 성실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서약한 7개 조항이 헌신짝처럼 또 기존에 반복된 약속을 잘 지켰다고 한 약속과 정반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많은 이들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건과 권고가

정말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6개월 안에 제출하는 그 내용 안에는 지금 우려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그 정신이 담아지고 구체적으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고 특정될 수 있는 노력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어쨌든 그런 내용들 충분히 심사위원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서 조건과 권고사항이 정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권고사항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SBS 노사 간 합의 내용이 노사 간의 합의에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됨으로써 그 취지와 내용을 실행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국민들에게 밝혔다는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 변경승인 과정에서 조건과 권고사항으로 부가된 내용들도 향후 노사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런 노력들을 예의 주시해서 이런 조건과 권고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입니다. <보고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과 <보고안건 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은 2건의 논의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니 함께 묶어서 보고를 받고 논의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건을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종원 혁신기획담당관**

- <보고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입니다. 「방송법」 제103조 제1항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임업무를 「방송법 시행령」에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는 2021년 6월 8일 「방송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6월부터 9월까지 편성평가정책과 그리고 방송통신사무소 등과 협의하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가> 위임업무 근거 신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인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 규정」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방송사 방송실시결과 접수, 방송편성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의 위임근거를 「방송법 시행령」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의 추가 위임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 중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업무를 방송프로그램 인정 업무와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방송통신사무소로 새롭게 이관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보고안건을 오늘 접수해 주시면 9월부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이후 11월 중에 시행령 개정안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상정 후에 12월 9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공포 및 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안건 나>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입니다. 「전파법」 제78조 제3항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임업무를 「전파법 시행령」에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2021년 6월 8일 전파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6월부터 9월까지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통신사무소 등과 협의하여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인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 규정」 제3조 제4호부터 제7호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국 개설·변경 허가, 방송국 허가 취소 및 무선국 폐지·운용정지, 허가 취소 시 청문, 전파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의 위임근거를 「전파법 시행령」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9월부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에는 시행령 개정안 위원회 의결 후 11월 말까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12월 9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공포와 시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상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금 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 내용 중에는 그동안 저희 위원회가 하던 순수외주제작프로그램 업무를 방송통신사무소로 이관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현재 방송기반국 소속의 편성평가정책과가 해당 순수외주제작 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5월 제19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순수외주제작 인정여부를 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전체 보고안건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당장 올해 말까지 방송통신사무소장의 책임 하에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것이 제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제 관련 업무와 예산이 모두 이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제 개정과 관련된 실무 유관 파트에서도 업무가 잘 이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방송법과 전파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훈령에 명시되어 있던 사무소 위임업무들을 이번에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과기정통부 등 유관부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안을 잘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이미 이번 개정안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업무가 방송통신사무소에서 하고 있던 업무인 만큼 조속히 시행령 개정안 절차를 완료해서 안정적인 업무위임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지역 중심의 새로운 방송통신 업무를 발굴하고 위임해서 지역 민원인의 편익을 높이고 사무소 역할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2018년 9월 방송통신사무소 설립 후 내부 훈령에 따라 위임 처리해 왔던 업무들이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 원안에 동의하고,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업무는 새롭게 이관되는 업무인데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업무가 있는지 발굴하면서 원활한 업무 수행이 되도록 인력과 예산 확보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추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9월 29일(수)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도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10분 폐회 】